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02호 2021. 5. 24.(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제2434호)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3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4호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준수의무 등)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 2019. 7. 1. 시행)에 따라 기존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제3조)

-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나.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의무(제4조)

-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5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에 따른다”를 “이용자의 식별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4에 따른다”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정한다”로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시간제 주차요금

1회 주차요금(1구획당)		월정기주차요금표
최초 30분 이내	30분 초과 시 30분 단위	
무료	500원	75,000원

예시) 30분 초과 ~ 60분: 500원, 60분 초과 ~ 90분: 1,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월정기주차요금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요금 면제(제3조의2제3항)

나. 주차장 표지 설치 규격 및 설치방법 변경(제5조)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7조)

- 현행 : 감정평가업자

- 개정 : 감정평가법인등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별표 1)

- 급지 구분 삭제

- 최초 30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 현행 : 1급지-500원, 2급지-200원

- 개정 : 무료

- 최초 30분 이후 요금 부과단위 변경

- 현행 :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요금 부과(1급지-250원, 2급지-100원)

- 개정 : 30분 초과 시 30분 단위 요금 부과(500원)

- 주간, 야간시간 구분 삭제

- 월정기주차요금 일원화

- 현행 : 1급지 - 75,000원(주간), 56,000원(야간)

- 2급지 - 20,000원(주간), 22,000원(야간)

- 개정 : 월 75,000원

- 월정기주차요금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